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26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이정문 · 이상식 · 박민규
이성윤 · 김남근 · 강준현
김현정 · 이연희 · 이학영
이강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검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공개가 늦어짐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가 아닌 과거의 정보로 가맹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에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의무로 운영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업방식 검증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사전검증 방식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이후에 승인하는 사후승인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함으로

써 가맹희망자가 정보비대칭 없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
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중 “가맹점사업자”를 “가맹사업의 업종 및 가맹점사업자”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작성·공개)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공개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의 승인) ① 가맹본부는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승인하였다는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정보공개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승인의 거부 또는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당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

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승인받는 경우 승
인 신청일

나. 가맹사업의 업종 변경을 사유로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공
개서를 변경승인 받는 경우 변경승인 신청일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승인한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승인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6.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승인받은 날 또는 가
맹사업의 업종 변경을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변경승인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가맹본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직영점 운영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 승인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정보공개서”로 한다.

제28조제6호 중 “등록”을 “작성 및 승인”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제6조의3 및 제6조의4”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를 “승인 및 승인 거부”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1호, 제3호”로, “제1호, 제1호의2”를 “제1호의2,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중전의 제1호) 중 “제6조의2제2항”을 “제6조의3제2항”으로, “변경등록을 하지”를 “변경승인을 받지”로, “변경등록을 한”을 “변경승인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6조의2제2항”을 “제6조의3제2항”으로 한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작성·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개한 자

1.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

것으로 승인을 받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10.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 -- <u>가맹사업의 업종 및 가맹점사업자</u> ----- -----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작성 · 공개)
① <u>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u>	① <u>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아니</u>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작성 및 공개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

제6조의3(정보공개서의 승인) ① 가맹본부는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

어 있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 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게 기재사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승인하였다는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정보공개서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의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승인의 거부 또는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당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

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승인받는 경우 승인 신청일

나. 가맹사업의 업종 변경을 사유로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변경승인 받는 경우 변경승인 신청일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승인한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승인받

	<u>은 경우</u> <u>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u> <u>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u> <u>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u> <u>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u> <u>6.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승인받은 날 또는 가맹사업의 업종 변경을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변경승인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직영점 운영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u> <u>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 승인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u>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④ (생략)

① -----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한-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공개서-----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2. (생략)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

-----.

1. ~ 5. (현행과 같음)
6. -----작성 및 승인-----
--

②

1.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승인 및 승
인 거부-----

2.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제
1호, 제3호-----
-----제1

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생략)

1의2. (생략)

2. ~ 4. (생략)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 7.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

호의2, 제1호의3-----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작성·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개한 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자

1의2. 제6조의3제2항-----

-----변경승인을

받지-----변

경승인을 받은---

2. ~ 7. (현행과 같음)

⑦ -----

1. 제6조의3제2항-----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생 략) ⑧ (생 략)	----- ----- 2.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	--